

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(제20조의11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행정처분기준
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	법 제29조의 5	자격취소
2. 법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	제1항제1호 법 제29조의 5	자격취소
3.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제1항제2호 법 제29조의 5	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
가. 2회 이상 대여한 경우	제1항제3호	
나. 1회 대여한 경우		
다.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		
4. 삭제 <2019. 12. 27.>		

비고: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